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4210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 문

원 고 1.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2. B

피 고 1. C

2. D

3. E

4. F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5. G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21. 사망하였다. 망인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망인의 형제자매 및 그 자손들이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중랑구 I 대 41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대표 J, 피고 G, K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각 상속분 1/36 상당의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피고 C 등은 2006. 11. 22.경 망인이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E, F이 망인에게 잔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G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 C 등이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4695호로 “피고 C은 망인의 이익을 위하여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2.경 시가 5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20,000,000원 상당의 피고 E, F 명의의 서울 성동구 소재 부동산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10,000,000원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3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6. 11. 28.경 피고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3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2. 6.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D, E, F, G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검찰은 위 피고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② 피고 C 등이 망인의 생전인 2010. 2. 1.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E, F이 2006. 12. 2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가, 피고 C이 2010. 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망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 1/36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웅, 판사 이유섭, 판사 백송이